

## 외항선에 대한 PI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하여

일본 연안에 방치되는 좌초선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4월 “유타손해배상보장법”이 개정되어, 외항선의 PI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2005년 3월 1일 이후에는

- PI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외항선은 입출항이 금지됩니다.
- 선내에 증명서 등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.
- 입항시, 지방운수국 등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됩니다.



일본국 국토교통성 해사국

# I. 보험의 의무화

외항선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선주책임보험(PI보험)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. 무보험 선박은 입출항이 금지됩니다.

## 【대상선박】

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중 아래에 표시된 선박 (유조선 제외)

- ◎일본국적선 :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(바지선 포함)
- ◎외국국적선 : 일본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 (바지선 포함)

※유조선은 이미 조약에 근거한 보험의무화가 실시중

## 【보험의 내용】

① 대상손해 : 이하의 사항을 부보할 것

- ◎연료유에 의한 유탁손해
- ◎선체 철거와 관련된 비용

② 최저보험금액 : 이하의 합계 금액 이상

- ◎인적손해가 포함된 경우의 선주책임제한액 (연료유에 의한 유탁손해관계)
- ◎물적손해만 있는 경우의 선주책임제한액 (선체 철거와 관련된 비용관계)

※선주책임제한액 :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 명시된 책임의 한도액

최저보장금액의 계산 예

2006년 7월 31일까지				
총톤수		100 톤	1,000 톤	10,000 톤
최저보상금액		667,000SDR	1,084,000SDR	7,421,000SDR
내역	유탁손해관계 부분	500,000SDR	833,500SDR	5,667,500SDR
	선체철거관계 부분	167,000SDR	250,500SDR	1,753,500SDR
2006년 8월 1일 이후				
총톤수		100 톤	1,000 톤	10,000 톤
최저보상금액		4,000,000SDR	4,000,000SDR	16,800,000SDR
내역	유탁손해관계 부분	3,000,000SDR	3,000,000SDR	12,600,000SDR
	선체철거관계 부분	1,000,000SDR	1,000,000SDR	4,200,000SDR

(참고) 2005년 11월 15일 환율 : 1SDR=1.42001 US 달러

※SDR : Special Drawing Rights (특별인출권)의 약어. 세계 주요통화 환율에서 일정한 계산식으로 산출됨. 최신 SDR은 국제통화기금(IMF)의 웹사이트 ([www.imf.org/external/np/tre/sdr/db/rms\\_five.cfm](http://www.imf.org/external/np/tre/sdr/db/rms_five.cfm))에서 확인 가능.

## II. 증명서 등의 비치

대상선박이 일본항구에 입항할 시에는 **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에 비치**해 두어야 합니다. 이 보장계약증명서는 신청에 의해 국토교통성 장관이 교부하는 것으로, 각 지방운수국 등에서 **신청**할 수 있습니다. (유조선은 현재의 취급방법과 동일)

유효한 보장계약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 **유효기간 만료 3 개월 전부터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 전자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.

지정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의 증명서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(Certificate of Entry 등)의 사본(Certified Copy 일 것)을 비치해 두면 됩니다 (증명서 면제).

또한, 보장계약증명서의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증명서 면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뒷면 참조)

## III. 입항통보의 의무화

**대상선박** 및 유조선(2,000 톤을 초과한 벌크유 적재시에 한함)이 일본항구에 입항하거나 특정해역에 진입할 시에는 해당 항구를 관할하는 **지방운수국 등에 사전에 통보**하여야 합니다.

통보사항은 선박명과 선적, 보험에 관한 정보 등이며,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뒷면참조)

(주) 특정해역이란, 도쿄만, 이세만 및 세토나이카이를 가리킵니다. (아래 표 참조)

특정해역	통보처
도쿄만	칸토(關東) 운수국
이세만	츄부(中部) 운수국
키이(紀伊) 물길에서 세토나이카이로 진입	킨키(近畿) 운수국
분고(豊後) 물길에서 세토나이카이로 진입	큐슈(九州) 운수국
칸몬(關門) 해협에서 세토나이카이로 진입	큐슈(九州) 운수국

## IV. 입회검사 등

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**담당관이 대상선박에 승선**하여 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.

또한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장계약체결 또는 그 비치명령, **운항정지 명령**이

내려지거나, 형사처벌의 적용대상이 됩니다.

- ◎유효한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채, 국제항해에 종사케 하거나 (일본국적선), 또는 일본항구에 입출항하게 한(외국국적선) 경우
- ◎보장계약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은 채, 국제항해에 종사케 하거나 (일본국적선), 또는 일본항구에 입출항하게 한 (외국국적선) 경우
- ◎입항통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
- ◎기타 법률로 규정한 사항

## V. 기타

연료유 유탁손해에 관한 책임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.

- ◎**무과실책임**을 도입  
연료유에 의한 유탁손해는 **고의·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**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.
- ◎선박 소유자 및 선박 임차인의 **연대책임**  
연료유에 의한 유탁손해는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박 소유자 및 선박 임차인이 **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** 됩니다.

### ■ 문의처 ■

	전화	팩스
■ 국토교통성		
국토교통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해사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총무과 해사보안·사고보장대책실	전자메일 : maritime@mlit.go.jp	
■ 지방운수국 등		
홋카이도 운수국 해상안전환경부 선박안전환경과	+81-134-27-7181	+81-134-23-4221
토호쿠 운수국 해상안전환경부 선박안전환경과	+81-22-791-7516	+81-22-299-8884
칸토 운수국 해상안전환경부 감리과	+81-45-211-7222	+81-45-662-6192
호쿠리쿠 신에츠 운수국 해상안전환경부 선박안전환경과	+81-25-244-6113	+81-25-248-7271
츄부 운수국 해상안전환경부 선박안전환경과	+81-52-952-8021	+81-52-952-8083
킨키 운수국 해상안전환경부 감리과	+81-6-6949-6423	+81-6-6949-6528
코베 운수감리부 해상안전환경부 선박안전환경과	+81-78-321-7054	+81-78-321-0966
츄고쿠 운수국 해상안전환경부 선박안전환경과	+81-82-228-8794	+81-82-228-3468
시코쿠 운수국 해상안전환경부 선박안전환경과	+81-87-825-1189	+81-87-821-5732
큐슈 운수국 해상안전환경부 감리과	+81-92-472-3173	+81-92-472-3305
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운수부 선박선원과	+81-98-866-1838	+81-98-860-2280